

March
2025

NEWSLETTER

에너지·자원팀

Energy & Natural Resources Team

CONTACT



변호사 김광열

T: 02.772.4412

E: kwangyul.kim

@leeko.com



변호사 김대홍

T: 02.772.4980

E: daehong.kim

@leeko.com



변호사 박정민

T: 02.772.4916

E: jungmin.pak

@leeko.com



수석전문위원 김상효

T: 02.772.4278

E: sanghyo.kim

@leeko.com

해상풍력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견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결국 자동폐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안)이 2025. 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해상풍력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기존의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른 난개발,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 내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상풍력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주요 내용
계획입지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해상풍력발전위원회: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제6조).민간협의회: 예비지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지정, 수용성 등 관련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제17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예비지구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예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14조).

계획입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의 수립 ·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 대상의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민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통보 및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제16조). • 발전지구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협의회 협의 및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관계 행정기관장이 발전지구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등의 허가, 처분 또는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19조). • 발전지구 계통의 연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하도록 하고, 설비를 건설한 송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예비타당성조사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제22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제23조).
	사업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공고 후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 내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며,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입찰 시 우대 가능(제24조).
	인·허가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5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전기사업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제27조).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주민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설계안 수립 시 계획입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제16조 제1항 제6호). • 민간협의회는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제17조 제1항 제5호). •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발전지구로 지정함(제19조 제3호).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 및 그에 대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완료된 것으로 봄(제26조).

산업진흥 및 에너지 안보	산업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진흥 및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제3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 관련 항만시설·배후시설·선박 등을 지원함(제4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음(제42조).
	에너지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2조).
기타	다른 법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지구·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감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해상풍력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함(제5조 제1항).
	전기사업 허가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금지함(제33조 제1항, 부칙 제1조). 공포일로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함(제33조 제2항, 부칙 제2조).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포 후 3년 경과 이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계속 사업 추진 가능함(부칙 제2조 제1항). 공포 후 3년 경과 이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2조 제2항).

2. 시사점

1)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 절차의 변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만 발전지구로 지정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누리는 등으로 인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사업준비기간이 기존(약 71개월) 대비 2배 이상 단축(약 31개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하에 계통 연계 가능성을 갖춘 지역만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요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통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거버넌스 개편

해상풍력특별법안은 발전지구 지정의 선결단계로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동 단계 전반에서 해상풍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민관협의회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입찰 및 선정은 발전지구 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독립적인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여로써 계획입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3) 인·허가의 의제 등

금번 해상풍력특별법안은 (i) 환경성평가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대체하도록 함과 더불어 (ii)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전기사업 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은 기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과 대조적으로 관련 인·허가의 일률적인 의제 효과를 가지므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후 인·허가 취득 절차의 간소화 및 그로 인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기존 사업자에 대한 처리

법 공포일 이전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전기사업 허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근시일 내에 시행하려는 사업자로서는, 해상풍력특별법 공포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득한 경우 (i) 기존 법률에 따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거나, (ii) 일정 기준을 갖추어 해상풍력특별법상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에서는 발전지구 내에서의 전기사업법상 인·허가 발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발전지구에서의 교통로 설치, 하천·해수면 매립 및 준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제19조 제5항)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해상풍력특별법안에 포함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이를 위한 입찰 등의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의 위임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발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추후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자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유) 광장의 에너지·자원 팀은 앞으로도 해상풍력특별법령을 비롯한 관련 제도 개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